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7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
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특별협의회 운영 시 의장 자격을 동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관련업무 부서장도
의장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특별협의회 의장 자격 변경(제14조)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)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4. 3. 6. ~ 3. 26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- 5)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(2024. 5. 14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전단 중 “**동장으로**”를 “**동장 또는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**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**동장**”을 “**동장 또는 관련 업무 부서장**”으로, “**동 민원**”을 “**민원**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는 동장과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되며, 의장은 <u>동장으로</u> 한다. 다만 <u>동장이</u>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<u>동 민원</u> 관련 팀장이 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14조(협의회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동장</u> 또는 <u>관련 업무 부서장으로</u> ----- ----- . ----- <u>동장 또는 관련 업무 부서장</u>----- <u>민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마포구 지명위원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신동빈
연 락 처	02-3153-8304